

보도시점 2026. 6. 18.(목) 12:00 / 배포 2026. 6. 18.(목) 08:30  
< 6. 19(금) 조간 >

##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주)(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 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

쿠팡(주)는 2026년 4월 9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쿠팡(주)는 ‘최혜대우요구 건’과 동시에 공정위가 안건 상정한 일명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9. 철회하고 같은 날 본 신청서 제출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인들의 심의 상정된 법 위반 혐의>**

신청인	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신청
우아한 형제들	최혜대우 요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설정을 강제한 혐의	○
	배민배달 우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한 혐의	○
	부당광고	'가게배달' 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	○
쿠팡	최혜대우 요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설정을 강제한 혐의	○
	끼워팔기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자사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를 연계하여 쇼핑 사용자의 배달앱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혐의	X

※ 사건별 세부 내용은 [붙임 3] 참조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책임자	과 장	이준현 (044-200-4499)
		담당자	사무관	진민 (044-200-4500)
			사무관	이상현 (044-200-4502)
			사무관	김건주 (044-200-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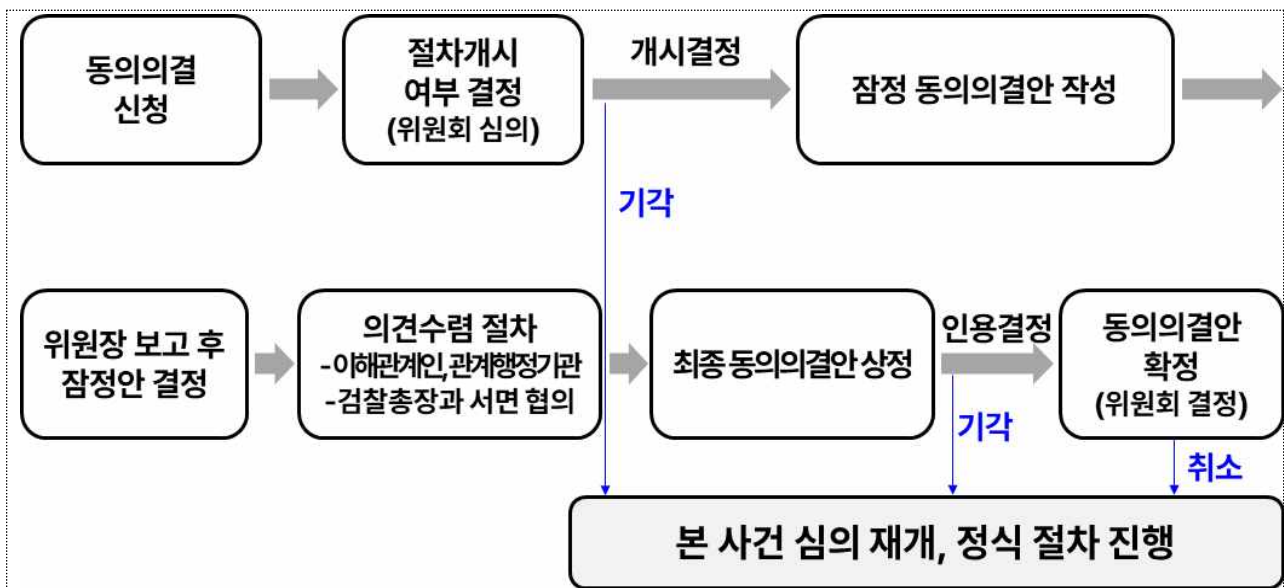
# 붙임 1 동의의결 제도 소개

## □ 동의의결 개요

-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 □ 동의의결 절차

-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의견수렴 절차 →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안 심의·확정



## □ 관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에게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 ③ (생략)

④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認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략)

**1. (주)우아한형제들이 제출한 시정방안**

구분	내용	
<p><b>경쟁질서 시정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 포함된 "다른 배달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메뉴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를 폐기하고(既 시행), 향후 이와 동일·유사 조건 설정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게배달-배민배달이 동일 기준에서 병렬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 선호에 따라 가게배달이 열위에 노출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게배달 배달품질 제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배달원 위치 제공, 기상악화시 배달반경 조정, AI 배달예상시간 제공 등</li> </ul> </li> <li>· 가게배달 정산능력 제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화면 개선, 지역화폐 결제 지원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가 제시하는 문구로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 차이에 대해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게배달 배달 정보 확대</li> </ul>	
<p><b>상생지원 방안 (3,000억 원) [3년간]</b></p>	<p><b>상생협력 기금조성 (1,400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게배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하위 20% 가게배달 점주 대상 한시적 인하 (3년간 2% 적용,페이백 방식, 약 100억 원)</li> </ul> </li> <li>· 가게배달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비 지원 등(3년간 약51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업체가 설정한 소비자 배달비 할인금액의 1/2 지원 (1회 1,000원 한도, 점주당 월 50건 한도)</li> </ul> </li> <li>· 교육 인프라 확충</li> <li>· 창업 및 재기 지원</li> <li>· AI 디지털 전환 지원</li> <li>· 주방개선 등 사업 집행</li> </ul>
	<p><b>파트너 상생협력 지원 (1,600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입점업체(전체 입점업체) 대상 쿠폰비 일부 지원</li> <li>·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입점업체 수수료/배달비 지원</li> <li>- 배민배달 전환시 수수료/배달비 지원</li> <li>- 트렌드 리포트, 컨퍼런스 등 제공</li> </ul> </li> </ul>

## 2. 쿠팡(주)가 제출한 시정방안

구분	내용
<b>거래질서 시정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와우매장 선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표시 삭제, 와우벤티지 부착, 입점업체 대상 안내 등(既 시행)</li> <li>·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 중단</li> </ul>
<b>입점업체 재정 지원 (600억 원) [4년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 기금 (32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 받은 입점업체 대상 지원 (280억)</li> <li>-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대상 현금성 지원 (40억)</li> </ul> </li> <li>·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대상 수수료·배달비 지원 (78억)</li> <li>·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 (12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우매장 영향 입점업체 광고비 지원 (52억)</li> <li>-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대상 광고비 지원 (72억)</li> </ul> </li> <li>· 국내 외식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15억)</li> <li>·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6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입점업체 특별 수수료 프로모션</li> <li>- 지역 인기, 우수 맛집 온라인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li> <li>- 지역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프로모션</li> </ul> </li> </ul>
<b>상생환경 조성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의체 설립, 입점업체 간담회 정례화, 핫라인 구축</li> <li>· 무료배달 용어의 사용 중단 및 '배달비 0원'으로의 표현 변경</li> <li>· 쿠팡이츠 관련 공정거래 주요사항에 대한 별도 교안 제작,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li> </ul>

## 붙임 3 배달앱 사건 주요 내용

### 1. 심사보고서 상정 경위

- 공정위는 끼워팔기 사건 신고('24. 6. 25.), 최혜대우요구에 대한 직권인지('24. 7. 17.)를 시작으로 배달앱 사건 관련 조사에 착수
  - 이후 다수 현안·신고가 추가 제기되고, 이를 유기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에 따라 '25. 5. 12.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여,
  - 약 100차례의 현장·서면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경제분석 등을 거쳐, '25. 10. 13. 및 '25. 11. 10. 주요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정

피심인	법 위반 혐의	사건 단서	심의 상정일
(주)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이하 '배민']	최혜대우요구	· 직권인지('24. 7. 17.) · 신고('24. 8. 1.)	'25. 10. 13.
	배민배달 우대	· 신고('24. 8. 1.) · 신고('24. 10. 7.) · 신고('25. 3. 28.)	'25. 11. 10.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 직권인지('25. 8. 6.)	'25. 10. 13.
쿠팡(주) (쿠팡이츠) [이하 '쿠팡']	최혜대우요구	· 직권인지('24. 7. 17.)	'25. 10. 13.
	끼워팔기	· 신고('24. 6. 25.)	'25. 10. 13.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 사건별 행위 사실

- (최혜대우요구) 쿠팡('23.3월), 배민('24.5월)은 자사 앱에서 다른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 설정을 요구하고
  - 입점업체가 최혜대우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 회원에 무료배달 혜택 등이 부여되는 매장(배민배민클럽, 쿠팡와우매장)에서 제외
- (배민배달 우대) 배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점에게 가게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21.6월~)

\* 배민배달 가게 노출 확대,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가게 배달 정액제 요금 폐지, 가게통합 과정에서 가게배달에 대한 불리한 설계 등

(부당 광고) 배민은 배달예상시간\*을 배달방식별로 다르게 산정하여, 가게 배달 상품보다 배민배달 상품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21.6월~)

\* 배달앱 내 첫 화면부터 주문 전(前) 단계까지 음식점별 광고란에 기재되는 배달 예상 소요시간

(끼워팔기) 쿠팡의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①통합회원 가입\*, ②쇼핑 앱 U 통합\*\*, ③통합 와우 멤버십\*\*\* 3중 장치로 쿠팡이츠(배달앱) 이용 강제(‘23.4월~)

\* 쿠팡(쇼핑)회원 가입 시 쿠팡이츠도 자동 가입되며 쿠팡이츠 별도 탈퇴 불가능

\*\* 쇼핑 앱 내에서 쿠팡이츠 원스톱 접속(쿠팡이츠 접속량의 40%) 및 교차마케팅

\*\*\* 쇼핑 멤버십(빠른 배송)+쿠팡이츠 멤버십(10% 할인, 무료배달), 월 7,890원

### 3. 심사관 조치 의견 (이하 내용은 위원회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법 위반 혐의별 적용법조

혐의	적용법조
최혜대우요구	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중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② 거래상지위남용 중 경영간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자사우대	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중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②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6호)
끼워팔기	-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5호)
부당 광고	- 기만적 표시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최혜대우요구) 시정명령, 과징금(관련매출액: 약 배민7,300억원, 쿠팡7,100억원)

(끼워팔기) 시정명령\*, 과징금(관련매출액: 약 5조 2,600억 원)

\* ① 통합회원의 회원 가입 분리(쇼핑/이츠 개별 가입) 또는 서비스별 탈퇴 보장 조치

② 쿠팡이츠 관련 혜택이 제외된 쇼핑 멤버십 출시

(배민배달 우대) 시정명령\*, 과징금(관련매출액: 약 7조 7,800억 원)

\* ① 배달예상시간 표시 관련 가게배달을 배민배달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 중단·금지

② 가게배달의 특정 큐레이션 노출 제한 행위 중단·금지

③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차등 금지 행위의 중단·금지

④ 가게배달 가게 노출 영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행위 금지

⑤ 그 외 노출 영역, 기준, 요금제 등에서 가게배달에 대한 불리한 취급 금지

(부당 광고) 시정명령, 과징금(관련매출액: 배민배달 우대와 동일\*)

\* 배민배달 우대 건과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두 행위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